

가격에 대한 조정

I. 기산요소의 의의

1. 가산요소

- 관세목적상 가격(value)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요소를 구매자가 발생시킴(부담함)에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조정하여야 한다.
 (협정 일반서설 제1항)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는
 다음의 금액이 가산된다.
 □
 (협정 제8조)

가산요소란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한 요소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면서도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제지급가격에 가산 조정하는 것이다.(법 제30조 제1항 각호)

다음 6가지를 가산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 i)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 ii) 관세목적상 수입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및 노무비, 재료비 등 포장 비용(Containers and Packing)
- iii) 수입물품의 생산, 판매와 관련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생산 지원(Assists) 물품 및 용역의 가격(value) 또는 인하차액
- iv)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 v) 수입 후 전매, 처분, 사용에 따른 수익 중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금액 (Proceeds)
- vi) 수입항까지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costs of Transport, Insurance an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처음 다섯 가지를 필수조정이라 하며, 마지막 여섯 번째의 가산여부는 회원국의 선택에 맡기고 있어 선택조정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CIF주의를 택하고 있어 수입항까지 유송비를 가산한다 (협정 제8조 제2항)

단, 가산은 반드시 규정된 6가지를 제외하고는 어떤 가산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송품장가격에 대한 최소한의 조정으로 거래당사자의 상관행을 존중한다는 관세평가의 기본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과세가격 결정시 실제지급가격에는 제8조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금액도
 가산될 수 없다.
 (협정 제8조 제4항)

2. 가산조정의 범위

** 관세목적상 가격(value)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어떤 특정요소를 구매자가 발생시킴(부담함)에도(incurred by the buyer)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but are not included) 실제지급가격에 조정하여이한다.

(협정 일반서설 제1항)

●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는 금액은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 (협정 제8조 제3항)

거래가격에 대한 가산요소의 조정은

- i) 구매자가 발생시키거나 부담하여야(incurred by the buyer)하고,
- ii)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iii) 또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만을 기초로 해야 한다.

🏥 ७४४केस्थ ६४ ४के। ।

-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00제품을 FOB조건으로 구매(수입)한다. 단, 이 구매계약에는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할 경우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 구매자는 00제품을 운송하기 위해 XX선사와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수입물품을 한국으로 운송한다.
- 그런데 선적항까지 판매자가 00제품을 제 시간에 운송하지 못해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다.
- 구매자 B는 XX선사의 청구에 따라 이 체선료를 지불하고, 매매계약에 따라 판매자 S에게서 이 금액을 환불받았다.
- 이 경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관세평가 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수입항까지 운송 비 및 관련비용'으로 '가산요소'에 해당된다.
- → 그러나 위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 매매계약에서 선적항에서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체선료는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물품가격 즉, 실제지급가격은 이러한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가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가산요소인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된 것이므로, 다시 가산할 필요가 없다.

ाह्य प्रस्केम व्यवस्था व

- 국내 XX사는 담배를 제조하기 위해 남미의 유명한 OO담배 재배사로부터 건조 담뱃잎을 수입한다.
- 또한, XX사는 수입 담뱃잎 외에 국내에서도 담뱃잎을 구매한다.
- 담배를 제조할 때 수입 담뱃잎과 국산 담뱃잎의 혼합 비율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 수입자 XX사는 OO사에게 완제품 담배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로열티로 지급한다.(이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가산요소'에 해당한다)
- → 완제품 매출액을 기초로 지급되는 로열티 전체가 아닌 수입물품에 관 런된 로열티만을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 담뱃잎에 관련된 로열 티 금액만을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가산 조정할 수 없다.
- → 단, 로열티 지급이 국산과 수입 담뱃잎의 특정한 혼합비율에 대해 이 뤄진다면, 로열티 가산조정은 이루어질 수 있다.

■ 가산율·공제율 제도(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시행규칙 제7조의9)

- 협정 제1조에 따른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제8조 가산요소의 조정 등은 각각 수입물품별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일정기간 통상적인 비율을 가산 또는 공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가산율·공제율 적용 요건
 -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적용 대상
 - -실제지급가격(간접지급, 공제요소 포함)과 가산요소의 확정 (법 제 30조제1항, 제3항)
 -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3조 제1항, 제3항)



가격에 대한 조정

Ⅱ. 기산요소 1

1. 수수료 및 중개료(Commissions and Brokerage)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금액; i)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협정 제8조 제1항)
 (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수수료와 중개료는 판매 계약에 참여한 중개자(intermediaries)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구매자가 중개자에게 지급하고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지급액이 가산되어야 하는지 여부는 중개자가수행하는 역할에 좌우되는 것이지 그 명칭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다.

■ 고시 제17조(수수료와 중개료)

법 제30조 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와 중개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1) 대리인과 수수료

대리인(agent)이란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자로 구매·판매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리인의 보수를 수수료라 하며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비율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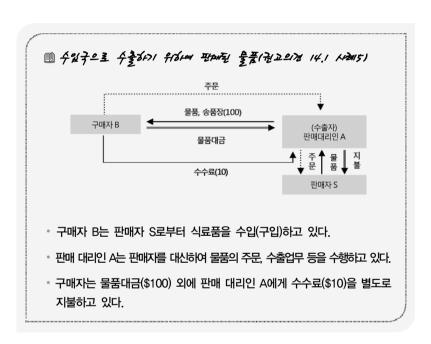
구매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구매대리인, 판매자를 대신하는 대리인을 판매 대리인이라 부른다.

판매 대리인이란 판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 다음과 같은 역 할을 하다.

- 판매자의 물품을 구매할 고객을 찾고,
- 주문을 받고 그것을 판매자에게 넘겨주고,
-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고,
- 송품장을 비롯한 수출서류 작성을 지원하는 등 용역을 제공한다.

보통 판매수수료는 판매자가 대리인에게 지급하고, 송품장가격에 포 함되므로 달리 조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별도로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수 수료는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단, 판매자가 지불한 수수료 를 구매자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구매자가 부담하지 않으므로 가산되 지 않는다



→ 판매 대리인이 수입물품과 관련해 판매자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주 문, 수출업무 등 용역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 는 경우 가산금액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2) 구매수수료

구매수수료는 평가대상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
 에 대하여 수입자의 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구매수수료란 수입물품 구매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신하는 용역에 대해 대리인에게 수입자가 지불하는 보수이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 구매자가 원하는 물품의 공급자를 찾고,
- 최적의 가격 협상을 지원하고.
- 판매자에게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통보하고,
- 샘플을 수집하고,
- 물품을 검사하고,
-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를 주선하고,
- 다른 경로로 반입되는 물품을 취합하고,
- 송품장을 작성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일반적으로 구매수수료는 물품가격과 별도로 수입자에 의해 지급된다.

1 子中午午至 八部1

- 구매자 B는 (먼 남미국가의)판매자 S로부터 식료품을 구입하고 있다.
- 과거 B는 직원을 출장 보내 직접 판매자 S와 가격협상, 물품선정 등을 수행하였으나.
- '10년부터는 현지 대리인 A에게 동일한 업무를 위탁하고 물품가격의 1%를 수수료로 별도 지급하였다.
- → 구매자를 대신한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1%의 수수료는 '구매수수 료'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 구매자가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비용은 보통 수입 후 국내판매가격에 전가 되며 수입시점의 관세평가와 관련이 없다.

만약 중개자가 자신의 계산에 의해 행동하거나 물품에 대한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또한, 구매대리인이라 칭하는 자가 판매자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구매대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그는 구매대리인이라기 보다는 판매대리인일 가능성이 더 높으므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 송품장 가격에 구매수수료 명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실제지급가격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구매수수료는 공제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구매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해당 물품에 대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지 않는 것이지, 구매수수료 성격의 금액이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가격에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한 비용에 구매수수료 외의 비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급한 비용 중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따로 구분하여 산정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구매수수료로 한다.(시행령 제17조의2 제2항)

■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와 쟁점 (예해 17.1)

- 세관당국은 중개자가 수행한 용역의 정확한 본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문서 (예: 대리인계약서(agency contract))를 요청할 수 있다.
- 세관당국은 대리인 관계를 입증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구매수수료 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 대리인이 수입물품 대금지급에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거래와 가격에 대해 통제(control)를 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으로 간주 될 수 없다.
- 대리인이 물품가격과 자신의 보수를 구분하여 수입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판매자가 발행한 송품장 및 신고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구매대리인의 일반적인 기능의 범위를 벗어난 다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청구 된 보수의 양면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공장에서 수출항 까지 물품을 직접 운송하고 그 운송비를 자신의 보수에 포함하는 경우, 청 구된 총 수수료는 구매수수료가 될 수 없다.

■ 시행규칙 제3조의3(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범위)

법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은 구매자의 계산과 위험부담으로 공급자 물색, 구매 관련 사항 전달, 샘플수집, 물품 검사,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을 알선하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구매대리인이 자기의 계산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 2. 구매대리인이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소유권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시한 권리가 있는 경우
- 3. 구매대리인이 해당 거래나 가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 구매수수료 사례 ≥ → 구매업무위탁계약



- 구매자 B는 수출국의 생산 (판매)자 S 등 여러 회사(판매자)로부터 전기 기기 등을 수입한다. 이때 수출국에 있는 구매자의 해외 자회사 C에게 S사 등과 의 매매계약 체결을 포함한 구매업무를 위탁하였다.
- 해외 자회사 C는 B의 위탁에 따라 자사(C) 명의로 S사 등으로부터 공장 인도조건으로 수입물품을 구입하여, 이것을 구매자에게 수출한다.
- 구매자 B는 해외 자회사 C의 송품장가격(공장인도가격+수출국내 운송비용 +수입항까지 운송비용) 외에 별도의 '수수료'를 C에게 지급한다.
- → 해외 자회사가 수행하는 역할의 본질에 따라 수수료의 관세평가상 취급이 달라진다. 해외 자회사가 실제로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자 의 구매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이라면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하는 수 수료는 '구매수수료'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 그러나 해외자회사가 수입물품 대금지급에 자신의 자금을 사용하는 등 소유권적 이해관계를 가지며, 거래와 가격에 대해 통제를 하는 경우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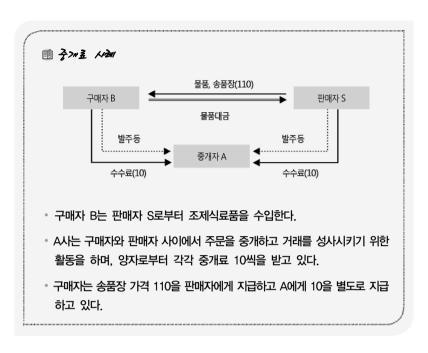
→ 또한 대리인이 물품을 구매한 후 수입자에게 물품가격과 자신의 보수를 구분하여 재청구한다는 단순한 사실이 대리인을 물품 판매자로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세관당국은 신고인에게 공급자가발행한 송품장 및 신고된 가격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의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중개인과 중개료

중개인(broker)이란 일반적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활동하지 않는 중 간 역할자(intermediary)를 말하며,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를 대행하며 보통양자를 서로 접촉하여 거래를 성립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중개인에 대한 보상은 통상 그의 활동 결과 체결된 거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중개료(brokerage)'로 지급된다.

중개인이 판매자에게 중개료를 받고 이 금액이 송품장가격에 포함되면 평가와 관련하여 문제되지 않으나, 중개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품장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구매자가 부담하며 구매수수료가 아니라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 → A가 중개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가산요소인 '중개료' 에 해당하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도에서 가산된다.
- → 따라서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 즉, 실제지급가격 110에 구매 자가 지급하는 중개료 10을 가산한 120이다.

2. 용기 및 포장비용(Containers and Packing)

- (a) 구매자가 부담하지만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다음의 금액;
 - ii) 관세목적상 해당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 비용(cost)
 - iii) 노무비, 재료비 여부와 관계없이 포장에 소요된 비용(cost) 59

(협정 제8조 제1항)

(법 제30조 제1항 제2호)

가산요소 두 번째는 용기 및 포장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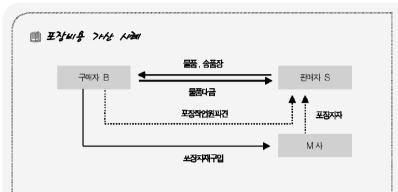
가산하는 금액은 용기 및 포장의 '가격'이 아니라 구매자에 의해 실 제로 소요된 '비용'이다.

가산되는 용기 및 포장비용은 '관세목적상 해당물품과 일체'로 취급되는 것, 즉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의 규정에 따라 내용물과 동일한 HS로 분류되는 것을 말한다.

'용기'에는 재사용되는 일반적인 종류의 상업선적 컨테이너가 포함되지 않으며, 사진기케이스, 향수병 등 운송 또는 소매 포장용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보호용으로 사용된 것들을 말한다.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5호

- 가. 특정한 물품이나 물품의 세트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고,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어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인 때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 예) 사진기 케이스, 악기 케이스, 총 케이스, 제도기 케이스, 목걸이 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
- 나.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 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러한 물품의 포장 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그 내용물과 함께 분류한다.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대형기계를 수입한다.
- 수입물품은 특수한 기계로 구매자는 판매자와 계약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담으로 해당 기계를 포장한다.
- 이를 위해 포장자재는 수출국의 M사에서 조달하고, 포장을 위한 작업원을 수출국에 파견하여 수입물품을 포장하였다.
- 송품장 가격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입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 '포장 비용'은 노무비, 재료비에 상관없이 폭넓게 해석된다. 구매자 가 부담하는 포장자재비, 작업원 출장비, 수출국 체재비, 임금 등 모두가 포장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가격에 대한 조정

Ⅲ. 기산요소 2

3. 생산지원(Assists)

**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하기 위한 판매와 관련하여 사용하기 위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아래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value)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도에서 적절히 배분한 금액 *** (협정 제8조 제1항 b호)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생산지원이란 예를 들어 구매자가 T-shirt를 구매하는데 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인 T-shirt의 재료인 옷감, 단추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매자의 생산지원이 없더라도 판매자는 해당물품의 재료인 원단, 단추 등을 직접 구입하고 그 비용을 물품가격에 포함시키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1) 생산지원의 종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원한 모든 것이 가산요소는 아니다. 다음 4가지 부류에 속하는 물품 또는 용역만이 가산되는 생산지원이다.

 i) 수입물품에 결합되는(incorporated)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이외 유사한 물품(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

물품

- ii)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used) 공구, 금형, 주형 및 이와 유사한 물품(tools, dies, moulds and similar items used in …)
- iii)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재료
- iv) 수입국 외의 곳에서 수행된(undertaken) 것으로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necessary) 기술, 개발, 공예, 디자인, 설계, 고안(engineering, 용역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and plans and sketches)

• 첫째, 수입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incorporated)되는 재료, 구성요 소, 부분품 등이다.

수입물품에 부착되어 있는 상표, 라벨 또는 상품의 하자를 응급처치하기 위해 포장 속에 추가된 스페어 부분품도 포함한다.

• 둘째,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used)되는 공구, 금형, 주형 등이다.

'공구'는 작게는 수공구(드릴)에서 크게는 산업기계까지를 포함한다. '금형, 주형'은 물품의 모양을 뜨는 데 사용된다. 단, 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일반적 용도의 장비, 사무기기나 에어컨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수출자(제조자)에게 검사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그 검사장비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입물품(완제품)의 특성과 그 생산공정을 고려하여 해당 검사가 생산공정의 일부이거나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검사장비는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반도체 소자 등과 같이 제조 단계별 테스트를 필요로 하는 제품의 경우 그 검사장비는 생산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국 CBP 545170, 1994,10,27, 참조)

- 셋째, 촉매, 윤활제, 연마제 등과 같이 수입물품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는 물품이다.
- 네 번째 생산지원은 물품이 아닌 용역으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개발·공예·도안·설계의 지원이다. 여기서 'development(개발)' 는 'research'가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된다.(결정 5.1)
 - 이 생산지원 용역의 부류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 ① 수입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수행(undertaken)되어진 것이어야 한다. 'undertaken(취해진)'은 'carried out(수행된)'의 의미로 이해된다.(결정 2.1)

- ② 네 가지 부류별로 정해진 요건, 즉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생산에 사용되는',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또는 '생산에 필요한' 것이어 야 한다. 기업운영, 회계관리, 법률에 관한 서비스는 생산지원에 속하지 않는다.
- ③ 공제요소인 '수입 후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또는 기술지원 비용' 이 아니어야 한다.

생산지원 중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과세하는데 반하여, 용역은 수입국을 제외한 해외 개발(수행)된 것만 과세하는이유는 대다수 국가가 국산 원재료 등에 대해 임가공 감면제도를 규정하고있기 때문이다.

대다수 국가에서는 관세법에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세 규정을 두어 국산 원재료 등이 해외임가공 후 재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국산의 원재료 또는 부품 생산 산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이 감면세 규정은 물품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개발(수행)된 용역이 수입물품에 체화되어 재수입될 때에도 관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세평가 상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정 제정 당시에 합의함으로써 국내의 용역 관련 산업에 대하여도 해외임가공물품의 감면세제도와 동등한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Rosenow 및 O'shea의 저서 p.51)

· 생사자원의 사례

- 구매자 B는 T-shirt를 수입한다.
- 첫 번째 경우 수입물품에 구현할 사진을 수입국에서 촬영하여 해외 제조업자에게 보낸다.
- 두 번째 경우는 해외 제3국에서 찍은 풍경사진을 무상으로 제조업자에게 보낸다.
- → 첫 번째 경우는 수입국에서 수행된 용역이므로 사진가격은 가산되지 않는다.
- → 두 번째 경우 수입국 이외에서 수행된 용역이므로 사진가격은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된다.

2) 생산지원의 기산요건

생산지원의 가산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i) 구매자에 의해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 ii)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되어야 한다.
- iii) 실제자급가격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 iv)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적절히 배분'되어야 한다.
- v) 제8조1항b호에 명시된 4가지 부류이어이만 한다.

圖 经处外经期费到 对此 医对 两期 1.

-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원단(천)을 무료로 제공하고, 판매자의 재단 및 봉재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셔츠를 구입한다.
- 제공된 천의 10%는 재단과정에서 웨이스트로 남고, 90%만이 구매자가 수 입하는 셔츠에 포함되었다.
- → 셔츠에 포함된 원단(90%)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이며, 웨이스 트로 남은 천 10%는 수입물품 생산과정에 소비된 것으로 구매자가 제공한 원단의 총 금액이 '생산지원'으로 가산된다. 이것은 판매자가 웨이스트를 스크랩으로 팔 수 있는 경우 더 명백해진다. 다만, 그 웨이스트의 판매수익이 구매자에게 다시 돌아온 경우에만 그 웨이스 트를 반영하여 생산지원의 가격을 감할 수 있다.

MAKARINBOI THE BY HAI Z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수입물품 OO을 수입한다.
-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XX는 구매자가 유상으로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 구매자가 제공하는 재료의 정상적인 수출가격은 \$100(취득가격 \$90+제공에 소요된 비용 \$10)이지만, 이번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제공한 재료는 판매자의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70으로 판매자에게 수출한다.
- 수입물품의 가격에 해당 재료의 인하된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해당 재료는 구매자가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구입한 것이다.
- → 재료는 구매자에 의해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제공되고,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며,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로 확인되고,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이므로 가산요소인 생산지원에 해당한다. 가산되는 금액은 인하된 가격인 \$30이다

3) 생산지원 가격(value)의 결정

생산지원의 가산을 위해선 그 가격(value)을 결정하여야 하다. 생산 지원의 가격은 일반적으로 그 생산지원의 취득비용 또는 생산비용이다.

▶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을

- 비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취득 비용(acquisition costs)
- 생산지원 공구 등과 용역(두 번째와 네 번째 부류)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말하다
- 구매자가 생산한 경우 그 생산비용
- 구매자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경우 그 생산비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제3자로부터 이를 취득하는 비용이다.

취득 비용이란 생산지원 물품 등의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뿐만 아니라 구매자가 해당 생산지원을 생산하는 판매자에게 공급한 다른 물품 또는 용역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산지원의 취득과 관련하여 수입자가부담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예해 24.1)

생산비용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생산자의 기록에 반영된 비용으로, 개발 및 제조 원가와 이에 배분되는 간접비를 포함하지만, 이유은 제외된다.*

▶ 또한 생산지원의 가격(value)에는

- 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상환되지 않는(non-reimbursed) 관세 및 조세도 포함된다. 다
- ★舊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제2호에서는 생산지원을 특수관계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생산지원의 생산비용을 산출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10.7. 시행규칙 제4조제3항제3호 가목에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으로 규정하여 이유을 제외하는 것으로 바로 잡았다.

만, 이들 비용을 수입물품의 판매자(제조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가산할 수 없다.

- 구매자가 이미 사용했다면, 사용된 부분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되어야 하고, 반대로 수리 또는 변형한 경우 그 비용은 고려되어야한다.
- 공공의 영역에서 이용 가능한 기술 등 용역은 사본 취득비용만이 가산된다.
- 생산지원 용역이 수입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걸쳐서 수행된 경우, 가산 조정은 수입국 밖에서 해당 생산지원 용역에 대해 실제로부가된 가치(value)에 한정되어야 한다.

iii अर्थ्यास्थ्य रामस प्रकेश (प्रकेशस र 8.2)

- 구매자 B는 외국의 판매자 S로부터 비디오 레이저 디스크 복사본 4,000장을 구입(수입)한다.
- 이 레이저디스크에는 국내 C사가 저작권을 보유한 뮤직비디오가 수록되어 있다.
- 이 레이저디스크의 생산을 위해 구매자는
 - -국내 C사와 라이선스계약을 체결하여 뮤직비디오가 수록된 마스터 테이프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내 판매 디스크 총매출액의 5%를 C사에 지급해야 하며.
 - -동 마스터 테이프를 사용하여 레이저디스크 생산에 사용되는 압인기 (stamper)를 판매자 S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이 때 국내 C사에 지급하는 5%의 라이선스 사용료를 가산해야 하는가?

- → 압인기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등'으로 협정 제8조제1항 (b)(ii)에 해당하는 생산지원이다. 구매자가 국내 C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이 압인기를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생산지원 의 가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 등'에 해당되는 마스터 테이프가 수입국에서 제작되었다 할지라도 제8조제1항(b)(ii)에 해당하는 생산지원 물품의 가격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S에게 압인기가 아니라 마스터 테이프를 제공했다면, 이 마스터 테이프는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디자인 등'으로서 협정 제8조제1항(b)(iv)의 생산지원 용역에 해당한다. 그러나이는 수입국에서 생산되었으므로 가산되지 않는다.

■ 시행규칙 제4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

- ① 영 제18조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조 립·기공·성형 등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을 말한다.
- ② 영 제1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은 특허기술·노 하우 등 이미 개발되어 있는 기술과 새로이 수행하여 얻은 기술로 한다.
- ③ 영 제18조 각 호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한다.
- 1. 해당 물품 및 용역을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입 또는 임치하여 구매자가 공급하는 경우: 그 구입 또는 임치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과 이를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2.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가 직접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그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3.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매자와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 터 구입 또는 임치하여 공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산출된 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
- 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의 생산비용
- 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물품 및 용역을 구입 또는 임치한 비용
- 4.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설계·고안·공예 및 의장(이하 이 호에서 "기술등"이라 한다)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경우 : 당해 기술등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에 해당되는 기술등의 금액

■ 고시 제19조(생산지원)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 ②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 ③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산지원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생산지원 용역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 원 가격에 포함한다.
- ④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수입물품의 생산에 직접 사용되는 종이로 만든 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4) 생산지원의 배분

- …구매자에 의하여 … 제공되는 다음의 물품 및 용역의 가격으로서, … 적절히 배분된(apportioned as appropriate) 금액⁹⁹ (협정 제8조 제1항 b호)
- (생산지원)요소의 배분은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생산지원인 금형으로 물품이 장기간 생산되고, 그 중 일부만 수입되는 경우 이 금형, 즉 생산지원의 비용을 어떻게 해당 수입물품에 배분하여 가산할 것인가?

'배분'은 '적절'하고, '상황에 적절한 합리적인 방법'과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에 따라야 한다.

'배분'은 수입자의 요청에 의해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결정되 며, 예를 들어

- 수입자가 일시에 전액을 가산하고자 할 때에는 최초 선적분에 전액 배분할 수 있고,
- 첫 번째 선적 시까지 생산된 단위수량에 배분될 수도,
- 계약 또는 확약되어 있는 전체 예정 생산량에 대해 배분될 수도 있다.

■ 시행령 제18조2(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금액의 배분)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금액(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국내에서 생신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산정한다)을 더하는 경우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배분한다.
- 1.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신량 대비 실제 수입된 물품의 비율
- 2.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이 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 생산과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생산 물품별 거래가격(해당 수입물품 외의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다) 합계액 대비 해당 수입물품 거래가격의 비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치액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배분할 수 있다. 이 경우수입되는 전체 물품에 관세율이 다른 여러 개의 물품이 혼재된 경우에는 전단에 따른 전액을 관세율이 다른 물품별로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안분하여 배분한다.

🗐 अर्रासिंग भार्स रहे।

- 구매자 B는 판매(생산)자 S로부터 주형제품(예: 휴대폰 케이스)을 구매(수입)하기로 계약하고,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몰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 판매자는 계약에 따라 4만개의 제품을 생산한다.
- 구매자는 이 중 3만개는 자국으로 수입하고, 나머지 1만개는 판매자로 하여 금 제3국의 지정된 자에게 수출토록 한다.
- 무상으로 제공한 몰드는 제품 4만개 제작이 끝난 시점에 판매자의 자유 처분에 맡겨진다.
- → 몰드는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주형 등'에 속하는 생산지원으로 가산요소이다.
- → 이 경우 구매자가 제공한 몰드의 (구입 또는 생산)비용은 계약된 제품 4만개에 배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즉, 국내로 수입된 3만개에 안분된 금액만이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가격에 대한 조정

Ⅳ. 기산요소 3

4. 권리사용료(Royalties and Licence Fees)

⑤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되고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 으로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 ™

> (협정 제8조 제1항 c호) (법 제30조 제1항 제4호)

권리사용료란 협정에서는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한다. 우리 관세법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물품을 제조, 판매, 사용 또는 전매와 관련된 '권리'에 대한 지급을 가리킨다.

1) 권리사용료의 가산요건

본래 권리사용료는 무형재에 대한 지급으로 물품세인 관세의 대상이 아니나, 유형재인 수입물품에 체화된 경우 물품 가격에 가산된다.

예) 보통 T-shirt와 명품 브랜드 T-shirt의 차이 : '명품 브랜드'라는 무형 의 가치가 T-shirt라는 유형재에 체화

권리사용료의 가산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단,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락자의 소재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i) 평가대상 물품과 '관련'(related to)되어야
- ii) 평가대상 물품의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이어야
- iii) 당연히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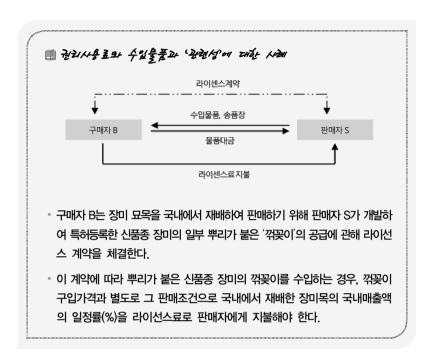
i) 관련성(related to)

수입물품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수입물품에 상표권, 저작권 또는 특허공법 등 무형재산권이 체화·구현되어 일체화되거나 일부를 이루고 있는 경우이다. 권리사용료의 '계산방식'이 수입물품과 관련 있다고 하여 수입물품 과 관련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관련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권리	수입물품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노하우 등	완성품	특허 발명품이거나 방법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것일 것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등	특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 되어 있을 것
	설비·기계·장치 (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 에 적합할 것
디자인권	완성품	당해 디자인을 표현하는 것일 것
	디자인권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의 부분품 또는 구성요소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표현 되어 있을 것
상표권	완성품	상표가 부착되어 있거나, 국내 에서 수입 상태대로 또는 경미 한 가공 후에 부착될 것
저작권	완성품	가사, 선율, 영상, 컴퓨터소프 트웨어[*] 등이 수록되어 있을 것
기타의 권리		가장 유사한 권리에 관한 규정 준용

^{*}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등 HS 제8523호에 속하는 전달매체는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19조 제4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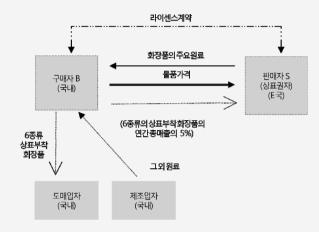
- → 수입물품에 판매자의 특허가 구현되어 있으므로 해당 권리사 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었으 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된다.
- → 단, 수입되어 발아된 삽목을 국내에서 재배한 나무에서 새로운 삽목이 자라, 이 새로운 삽목의 국내매출액에 대해 라이선스 료가 지불되는 경우는 수입물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ii) '판매조건'(as a condition of sale)

'판매조건'이라 함은 수입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반드시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즉, 권리사용료 지급을 조건으로 해당 거래가 성립된다는 의미다.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거나,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 하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의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면, 권리사용료는 '판매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画 岩孔从务至 - (亚加圣汉) 人)



- E국의 판매자 S는 국내에서 보호되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
- 구매자 B는 S의 상표로 6가지 종류의 화장품 제조·판매한다.
- 구매자 B는 S의 상표로 판매한 모든 종류 화장품의 연간 총매출의 5%를 S에게 권리사용료로 지급한다.
- 모든 종류의 화장품은 국내에서 얻어진 원료를 이용하여 판매자 S의 제조법에 따라 제조하나, 예외적으로 한 제품만 S로부터 필수 원료 하나를 일반적으 로 구매하고 있다.
- 그러나 구매자 B에게 필수 원료의 구입의무는 없다.

구매자 B가 해당물품을 판매자 S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고 국내의 공급자로부터 구입할 수도 있으며, 이와 상관없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 여야 하는 것이므로 '판매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판매조건'을 판단하는데 있어 '구매선택권'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시행령 제19조제5항은 다음의 경우 '판매조건'에 해당한다고 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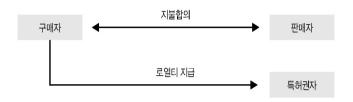
■ 시행령 제19조 (권리사용료의 산출)

-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 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 는 경우
-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 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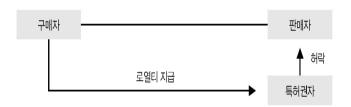
2) 제3자 권리사용료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되었다면 직접 지급되었든 제3자에게 간접 지급되었든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되어 야 한다. 수입물품과 '판매조건'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 기 위하여 제3자인 권리보유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권리보유자 의 허락을 받아 이를 판매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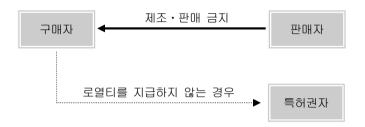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는 수입물품의 판매계약서에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시적 문구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판매계약서에 권리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한 명시적 문구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판매조건'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 계약과 라이선스 계약 등 관련 문서들의 계약 및 법적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여 판매 및 수입과 관련된 제반 사실이 검토되어야 한다.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가 '판매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시행규칙 제4조의2, 고시제21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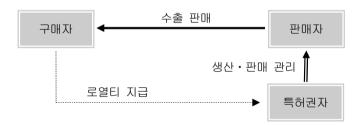
- ①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② 권리사용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 관련 자료에 물품 판매에 대해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 ③ 물품판매계약 · 권리사용계약 또는 각각의 계약 관련 자료에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는지 여부



④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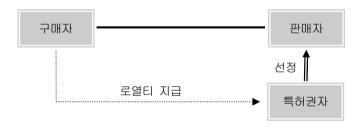
⑤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을 허락한 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입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 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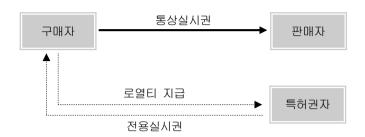
⑥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 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 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⑦ 수입물품의 판매자와 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 또는 권리권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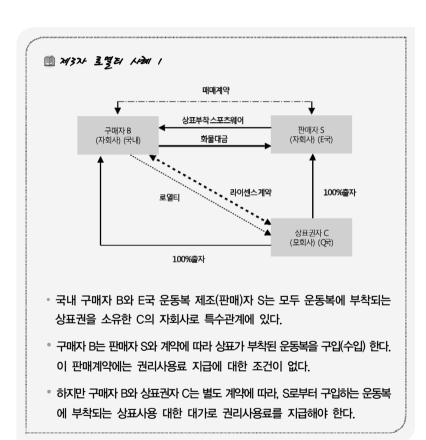


⑧ 특허권 등의 권리권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자를 선정 또는 지정하는는 등 구매자에게 수입물품 구매에 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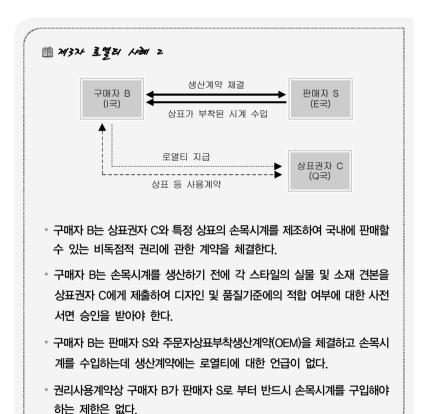


① 구매자가 특허권 등(상표권은 제외)의 권리권자로부터 수입물품 과 관련된 특허권 등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허락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고 구매자가 해당 권리 권자에게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 → 운동복에 상표가 부착되어 있으므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 이 있다.
- → 구매자와 판매자의 계약에 권리사용료에 대한 명시적인 조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구매자가 상표가 부착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위해 모기업인 상표권자 C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판매조건'이다. 구매지는 권리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 상표권자는 손목시계를 생산하기 전에 견본을 제출받아 디자인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대해 승인할 권리가 있지만, 이를 두고 품질관리 차원을 넘어 판매자를 상대로 그 생산이나 수출행위를 직접 관리・통제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구매자와 판매자가 거래하여야 하는 제한도 없으며, 구매자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판매자가 법률상・사실상 본 제조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구매자는 손목시계를 구매하기 위하여 상표권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 법적권리 뿐 아니라 'know-how'로 불리는 '영업비밀'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거래당사자가 판단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은 대부분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
 (관세법 제30조 제1항 4호)
-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1. 저작권 등의 법적권리와 2. 영업비밀을 말한다.○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 '영업비밀(Know-how)'

법적 권리에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 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말한다.(시행령 제19조제1항)

▶ 법적권리의 종류

권리	근거법령	보호대상
특허권	특허법	발명 (물건, 방법, 생산방법)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법	물품 구조, 형상에 관한 고안 (소발명)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물품의 디자인 (형상, 모양, 색채 등)
상표권	상표법	상품, 서비스에 사용하는 마크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색채 등과 이를 결합한 것)
저작권	저작권법	문학, 음악, 연극, 회화,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 퓨터프로그램 저작물 등

▶ '재현생산권(Right to reproduce)'

● 수입물품을 수입국 내에서 재현 생산(reproduce)하기 위한 권리사용료는 실제 지급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그러나 재현생산권에 대한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을 수입 후 재현생산되는 물품과 관련된 것이지 해당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되지 않는다.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공허한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사용료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अर्जनस्थरम्स १ स्ट्रेश ।

- 구매자 B는 외국의 사진가 S의 사진집 출판을 위해 S로부터 사진을 수입(구입)하였다.
- 구매자는 사진대금과는 별도로 S와 계약에 의해 사진집의 국내판매가격의 1%를 라이선스료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조건으로 사진집용 사진이 수입되었다.
- →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라이선스료는 수입물품인 사진을 국 내에서 편집, 인쇄하여 사진집을 출판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 즉 '수 입물품을 수입국에서 재현하기 위한 재현생산권'의 대가로 과세가격 에 가산되지 않는다.

IN THE PARTY PART 2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애니메이션이 수록된 마스터 비디오테이프 를 수입하였다.
- 구매자 B는 마스터 비디오테이프에 저장된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국내 TV 등을 통해 방영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고 그 대가로 라이선스료를 판매자 S에게 지급하였다.
- → 라이선스료는 애니메이션 영상물을 우리나라에서 TV 등 수신매체를 통해 방영하는 방법으로 재현하는 권리의 사용 대가로 지급된 것이 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는다.

■ 재현생산의 예시

- 문학작품 원고를 수입하여 책을 발간 · 판매하는 것(문학작품)
- 외국 미술관의 유명 조각작품을 수입하여 복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 (미술품)
- 만화·영화의 주인공이나 그 캐릭터를 카드나 연하장에 복사하여 판매하는 것(아이디어)
- 새로운 장난감의 시제품을 수입하여 대량으로 복제하는 경우(시제품)
- 해외에서 개발된 기존 해충의 천적을 수입하여 대량으로 번식하는 경우(동물의 번식)
- 수입물품을 견본으로 몰드를 제작하고 이 몰드로 동일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물리적 재현)
- 전자회로 도면(계통도)을 수입하여 전자회로기판에 식각공정을 거쳐 회로로 구현하는 것(발명)

● 수입물품을 '공급하거나 전매하는 권리'에 대한 구매자의 지급은 그러한 지급 이 수입물품을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한 '판매의 조건'이 아니라면 실제지급 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 ⁹⁹ (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수입물품을 '공급·전매하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판매 조건'이 아니라면 가산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후 '국내에서 공급·전매하는 권리'이므로 수입물품 수출판매의 조건이 아니라면 가산할 수 없다는 뜻이다.

4)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권리사용료가 일부는 수입물품을 기초로, 나머지는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기타 요인에 기초하고 있는 경우, 전체 권리사용료 중 해당 수입물 품에 관련된 부분만 산출하여 가산하다.

이때 권리사용료의 산출은 객관적이고 수량화 가능한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제1방법이 적용될 수 없다.

■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 (고시 제22조)

- 1. 수입물품이 <u>완제품</u>(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u>총지급 권리사용</u> 료 전액을 가산한다.
-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가 수입부분품 등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될 완제품 전체와 관련된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중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 3. 수입물품이 <u>방법에 관한 특허를</u>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u>총지급 권리사용료 전액을 기산한다.</u> 다만,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 <u>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u>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u>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총지급 권리사용료에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전체 설비 등의 가격 중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는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기산한다.</u>

이러한 방법으로 가산할 권리사용료 금액을 산출할 때, 위 규정의 '총지급 권리사용료'는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시 제22조제2항)

-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는 그 밖의 사업 등에 대한 활동 대가는 공제 한다.
- 권리사용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권리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포함하다.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을 사용하여 생산된 제품의 생산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의 사용연수, 생산능력 및 생산되는 제품의 수요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출할수 있다.

다음으로, 위 규정에서 '수입물품의 가격' 및 '완제품의 가격'은 다음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고시 제22조 제3항 및 제4항)

- '수입물품의 가격'은 가산하려는 권리사용료를 제외하고 다른 가산 요소들(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제2호 단서의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은 GAAP에 따른 회계보고서 등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완제품의 가격에 포함된 수입원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조원가는 직접재료비(수입원재료와 국내원 재료를 포함)에 직접노무비 및 제조간접비를 더한 금액으로 판매비 와 관리비, 이윤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완제품의 가격'에서 제외되는 '세금'에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다. 단, 완제품의 제조원가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그렇다.
- 제2호 단서에 따른 조정액을 계산할 때 완제품가격에서 제외되는 권 리사용료는 GAAP에 따라 제조원가에 반영된 권리사용료를 말한다.

■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

- 전달매체에 수록된 데이터 처리장치용 S/W('매체수록S/W')의 과세가격에 S/W 자체의 가격을 포함시킬 것인지? (실제지급가격의 문제)
 - -관세평가위원회는 결정 4.1(1984.9.24)을 통해 '매체수록S/W'의 과세가격에 데이터 처리장치용 S/W의 가치를 포함할지 여부를 체약국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였음
 - -이에 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으로 한다는 과세가격 결정 의 원칙에 따라 S/W의 가치도 포함한다는 입장
 - -따라서 '한 개의 물품'과 다름없이,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호X' 등 시중에서 '한 개에 000원'식으로 가격으로 거래되는 매체수록S/W의 괴세가격은 그 가 격을 실제지급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이 결정에서 '전달매체'란 집적회로, 반도체 및 그러한 회로 또는 장치를 결합한 유사한 장치들은 포함하지 않으며, '데이터나 명령'은 음향, 영화 또는 영상기록물을 포함하지 않는다.
- 다음으로 가격(price)으로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매체수록S/W'에 대해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의 처리는? (권리사용료의 문제)
 -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판매조건'으로 지급될 때 가산된다. 따라 서 이러한 조건이 만족될 때 해당 권리사용료는 가산되어야 한다.
 - -그러나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컴퓨터S/W가 HS8523에 속하는 마그네틱테이프, 마그네틱디스크, 시디롬 등에 수록된 경우 관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가산되지 않는다.



가격에 대한 조정

Ⅴ. 기산요소 4

5. 사후귀속이익(Proceeds)

수입물품의 수입 후(subsequent)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proceeds)
 중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협정 제8조 제1항 d호) (법 제30조 제1항 제5호)

수입물품의 수입 후 전매, 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이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실무상 사후귀속이익이라 부른다.

'수입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총금액'이라는 실제지급가격의 정의에 비추어 볼 때, 사후귀속이 익은 이 실제지급가격, 특히 간접지급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사후귀속이익은 통상 그 금액 자체가 수입 후 상황에 따라 가변적 이고, 경우에 따라 실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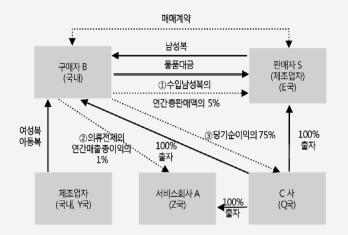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사후귀속이익은 '거래가격 배제사유'의 하나로도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사후귀속이익이 존재하는 거래에서의가격은 그 물품의 가치(value)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입 당시 또는 합리적인 기간(reasonable period) 이내에사후귀속이익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여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서는가산요소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토록 하고 있다.(법 제30조 제3항 제3호 단서, 협정 제1조(1)(c))

사후귀속이익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인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사후 귀속이익은 존재만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된다. 단, '수입물품의 전매' 등에 따른 수익이므로 수입물품과 관련은 되어야 한다. 배당금의 이동 같은 기타지급은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다.(사례연구 2.1, 2.2)

■ 사후귀속이익과 권리사용료

- 많은 경우에 권리사용료는 수입물품의 재판매 가격의 일정률(%)로 지급된다. 만약이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과 관련은 있으나 판매조건에 해당되지 않아 권리사용료로서 가산할 수 없을 수 있다. 이때 해당 권리사용료를 '사후귀속이익'으로보아 가산할 수 있는가?
 - -물론, 판매자와 권리권자(권리사용료를 지급받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연히 '사후귀속이익'이 될 수 없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 -그러나 판매자와 권리권자가 동일하거나,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반된 두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 일반적으로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은 무형재인 '권리'의 사용이고 사후귀속이익은 유형재인 '물품' 자체의 전매·사용·처분이므로, 그 대상이 달라 판매조건이 이닌 권리사용료를 사후귀속으로 가산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과거 EU 관세법위원회의 예해 3에서는 가산요소는 각각 그들 자체의 범위를 가지므로 로열티 및 라이선스료의 정의에 부합하는 금액은 권리사용료로서만 검토되어야 하며,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후귀속이익으로 고려되지 않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었다. (2018년 수정된 예해 3에서 이 단락은 삭제되 었다.) 캐나다도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CBSA Memorandum D13-4-9)
- 다음으로 각 가산요소는 서로 독립적인 규정이므로, 어떠한 지급액이 '권리사 용료'로서 가산될 수 있는지 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가산될 수 있는지는 각 각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 -그 근거로는 어떤 권리사용료가 생산지원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해 지급되는 경 우 생산지원의 가격으로 가산될 수 있는 것(권고의견 4.8, 4.18, 사례연구 8.1, 8.2 참조)처럼 사후귀속이익으로도 검토·가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미국의 경우 1991년 HRL 544436(C.S.D. 91-6, 1991.2.4., 일명 Hasbro I ruling)과 General Notice on the Dutiability of Royalty Payments(1993.2.10., 일명 Hasbro II ruling)을 통해 로열티 지급액은 '권리사용료 및/또는 사후귀속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 八季刊春の19 八湖 (八湖里子 2.2)



- 국내 의류도매회사 B, E국의 의류제조업자 S, Z국의 서비스회사 A는 모두 Q국의 C사의 자회사로 C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운영된다.
- 국내 의류도매회사 B는 같은 C의 자회사인 판매자 S로부터 남성복을 수입하고, 여성복과 아동복은 특수관계가 없는 국내외 제조업자로부터 수입 또는 구입하고 있다.
- 구매자 B는 C사가 정한 경영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지불을 한다.
 - ① 매년 말 판매자 S로부터 수입한 남성복 연간 총매출액의 5%를 수입물품 가격과 별도로 판매자 S에게 지급한다.
 - ② 매년 말 C의 자회사인 서비스회사 A에게 B가 판매한 모든 의류의 연간 총매출에서 실현된 총이익금의 1%를 지급한다. 이 금액은 A가 C의 모 든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저금리 융자 등 금융서비스에 대한 보상이다.
 - ③ 매년 말 B는 단기순이익의 75%를 모회사인 C사에 지급한다.
- 모회사 C사와 자회사 B, S, A사는 특수관계에 있지만 이 특수관계는 거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다른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 증명되었다.

- → ①(판매자 S에게 수입물품 매출액의 5% 지급) 판매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입물품 전매에 대한 사후귀속이익으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하다.
- → ②(서비스회사 A에 전체 매출에서 실현된 총이익금의 1% 지급) 특수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급되지만, 수입물품과 관련 없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지급으로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다.
- → ③(모회사 C에 당기순이익의 75% 지급) 수입물품과 관계없는 배당 금 또는 기타 지급금액으로 사후귀속이익이 아니며, 간접지급으로 거래가격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6. 운임, 보험료 및 운송 관련비용

(cost of transport, cost of insurance and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 각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다음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것
 인지 제외시킬 것인지를 규정해야 한다.
 - a) 수입항(장소)까지 수입물품 운송비용
 - b) 수입항(장소)까지 수입물품 운송과 관련된 적하비, 양하비 및 취급수수료
 - c) 보험료

(협정 제8조 제2항)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1) 개요

우리나라는 운임, 보험료, 비용을 포함하는 'CIF주의'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하 이들을 합하여 '운임 등' 이라 한다) 모두를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운임 등'은

- i) 협정에서 허용하는 비용만이 가산되며,
- ii) 공제요소인 수입후의 운송비용은 제외되고,
- iii) 국내법령에서 정한 비용만이 가산된다.

가산할 운임 등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될 때까지의 비용을 말한다.(시행령 제20조제5항) 여기서 '수입항'이란 해당 수입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륙(일시 양륙은 제외)이 이루어지는 항구 또는 공항을 말하며, '수입항도착'이란 수입물품의 양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고시제24조 제1,2항)

2) 운임 등의 산출방법 등

운임 등의 산출방법은 시행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운임과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 ·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시행령 제20조제1항)

다만, 운임 명세서 등에 의해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송거래·운송방 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시행령 제20조제2항)

■ 시행규칙 제4조의3 (운임 등의 결정)

- 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운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1. ... 운송수단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운항하여 수입되는 경우: 해당 운송수단 이 수출항으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 2.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여러 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거나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따라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경우: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배분한 운임으로 한다.
- 3.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 없이 총 허용정박 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滯船料) 또는 조출료(早出料)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 허용정박 시간을 선적항과 수입항에서의 허용 정박시간으로 반분(半分)하여 계산된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를 포함한 운임. 이 경우 실제 공제받은 조출료는 유임에 포함하지 않는다.
- 4. 법 제254조의2제6항에 따라 통관하는 탁송품으로서 그 운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

이러한 운임 등의 신출방법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제24조 제3항)

■ 고시 제24조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 ③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실제로 드는 비용을 말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1. 수입물품을 운송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운송계약에 기초한 해당 운송의 대가로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최종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말한다.
- 2. 수입물품을 용선계약에 따라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 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 3.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 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합산한 금액
- 4.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5.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 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 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 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6.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7.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 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다
- 8.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 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 9. 규칙 제4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탁송품 과세운임표에 따른 운임은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따른다.

무상 또는 소액 등 아래와 같은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과 보험료를 산출한다. 이를 실무상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이라 한다.(시행령 제20조제3항)

이 특례 규정을 적용받으려면 가격신고를 할 때 해당 물품이 동 특례 대상 물품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자료 제출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 다. (시행령 제20조제6항)

■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

-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수출물품의 제조 · 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
 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 또는 보수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5.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출물품을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 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받는 물품으로서 자가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우리나라 국민,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가 입국할 때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 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 인 물품
- 9.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 10. 항공사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으로 운송하여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 11.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그 밖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 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 12.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으로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천재지 변이나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운송수단을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하여 항공기로 긴급하게 운송하는 물품

상기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의 운임과 보험료의 구체적 산출방법 은 다음과 같다.

■ 항공운송 운임 등 특례 물품의 운임 산출방법 (시행규칙 제4조의3)

- ③ 제2항 각 호의 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적용 운임이 실제 발생한 항공운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운임 을 적용한다.
- 1.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 편물요금표에 따른 요금. 이 경우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표 시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 2. 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물품: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해당 물품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
- ④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제2항 각 호의 물품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대한 보험료로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수입자의 선박 등으로 운송되는 특정한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통상의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0조제4항)

■ 통상의 운임 적용 물품 (시행령 제20조 제4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25조제1항에 따른 선박회사 또는 항공 사(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선박회사등"이라 한다)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 1. 수입자 또는 수입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선박회사등의 운송수단으로 운송되는 물품
- 2.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수 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 기타 특수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 고시 제25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의 "선박회사등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한다.

운임 등은 다른 가산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고시에서는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고시 제 24조 제4항)

- ④ 제3항에 따른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해당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이 경우 해당 운임 등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 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판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운임 등을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자가 실제지급가격과 별도로 지급하는 수입 항까지의 운임 등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구매자가 지급하기로 한 경우 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여, 해당 수입항까지 의 운임 등을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 수출판매 계약에 따라 선박으로 운송하기로 한 수입물품이 항공으로 운송된 경우(규칙 제4조의3제2항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 가. 해당 계약에 따라 판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 격에 가산하며, 판매자가 지급하는 때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된 것으로 취 급한다.
 - 나. 해당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등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은 실제지급가격에 가산한다.
 -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해당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당초 계약의 약 정에 따라 판매자가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제 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취급한다.

3) 인코텀즈(INCOTERMS) '정형거래조건 통일규칙'

인코텀즈(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약자)란 국제무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래조건들을 정형화하기 위해 국제상공회의소에 서 제정한 것으로 정식 명칭은 '국내·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이다. 현재 사용 중인 것은 2020년에 개정된 'Incoterms'[®] 2020'이다.

▶ FOB & CIF

구분	위험이전	비용이전	비고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 선에 적재하였을 때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수출통관 : 매도인 수입통관 : 매수인
CIF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 비용+목적항까지의 운 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

- FOB(Free on Board): '본선인도'조건에서 판매자의 의무는 수출지, 즉 선적항에서 물품이 운송수단에 놓이거나 선적될 때 끝나며, 이후 구매자가 물품의 손실·파손에 대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한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인도'조건에서 판매자는 적재시까지 비용 뿐 아니라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일반적인 경우 운임, 보험료는 FOB 조건의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 CIF조건에서는 포함되어 있다. 각 거래조건에 따라 가산·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INCOTERMS 2020의 주요내용

구분 거래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EXW (Ex Works) (공장인도)	매수인의 작업장 구내에 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 하였을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 지의 제비용 부담	● 수출입 통관 · 승인 : 매수인의무
FCA (Free Carrier) (운송인인도)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 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 였을 때	//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 의 부두에 혹은 바지 선으로 본선의 선측 에 인도하였을 때	//	//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하였을 때	//	//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 하비 부담	//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인도)	//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 의 경우 양하비 부담	//

구분 거래조건	위험이전(A)	비용이전(B)	비고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 인도)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 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 운 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	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개념에	//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 보험료 지급인도)	//	매도인은 CPT조건+지 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 보험료 부담	//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 송수단에 실린 채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매도인은 A(위험이전)까 지의 제비용 부담	//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앙하인도)	도착운송수단으로부 터 양하된 상태로 지 정목적지나 합의된 지 점에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이는 때	//	//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 (단, 관세 포함)	● 수출입 통관 · 승인 : 매도인의무			

4) 운송 관련비용 평가처리

장치·보관료(storage costs)는 발생 시기, 장소에 따라 여러 가지이지만,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장치·보관료에 한해 운송 관련비용으로 처리된다.

則 なれを発達(storage costs) APM (叫が 7.1 5th)

- 구매자 B는 E국의 판매자 S로부터 공장인도가격으로 기계를 구매(수입) 한다.
- 해당 수입물품을 적재할 예정이던 선박에 사정이 생겨, 다른 선박을 구해 수출항으로 보냈다.
- 구매자는 그동안 수출자로부터 인도받은 기계는 수출항의 장치장에 임시로 보관하고 창고업자에게 보관료를 지급하였다.
- → 장치장 보관료는 운송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보관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산요소인 '수입항까지 운 임 등'에 해당된다.

체선료란 선적 또는 하역이 완료되지 않아 약정기간 이상 정박시켰을 때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이다.

剛 浏灯盖 人名

-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석유화학제품을 FOB 가격으로 구입(수입)한다.
 구매자는 선사와 수입물품을 국내로 운송하기 위해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다.
- 해당 판매계약에는 판매자의 귀책으로 인해 구매자가 용선한 선박의 선적지 연으로 체선료가 발생한 때에는 판매자 S가 이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
- 이 때 판매자 S의 사정으로 선적항에서 체선료가 발생하였고, 선사의 청구에 따라 구매자는 체선료를 선사에 지급하였다. 그리고 구매자는 판매자와의 판매계약에 따라 선사에 지급한 체선료를 판매자로부터 회수하였다.
- 이 경우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가산하여야 하는가?
- →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통상 '수입항까지의 운송 관련비용'으로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범위에서 가산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례에서 선적항에서 발생한 체선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판매계약에 근거하여 판매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즉, 해당 판매계약의 가격은 이러한 조건 하에 정해진 가격이다. 따라서 해당체선료는 물품가격(실제지급가격)에 이미 포함된 것으로 보아 다시가산하지 않는다.

प्रेम्टिर्गण वार्तम हर्षिर रिक्ष्ट्रें ह्रिक्ष रिक्ष प्रेम्मा प्राप्त प्राप्त विकास वि

- 구매자 B가 수입하는 여객기는 수출국에서 판매자 S로부터 인도받은 후 구매자의 승무원에 의해. 구매자 비용으로 국내로 운항되어 왔다.
- → 자력운항에 의해 도착한 수입물품의 운임은 해당 선박, 항공기가 수출 항에서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 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그 밖의 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이다.

착지불수수료(charge collect fee)

보통 수하인이 운임을 지급하는 FOB 조건의 거래에서 선하증권B/L 하단에 'C.C.F.'라는 명칭으로 표기되는 '착지불수수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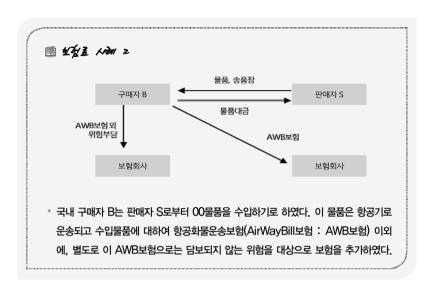
→ '착지불수수료'는 운임 후불에 대해 운송사 또는 물류업체에 지불하는 수수료로 성격상 '운임'이나 '운송 관련비용'이 아니다. 따라서 착지불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가산되지 않는다.

5) 보험료

보험료는 수입항까지 운송과 운송관련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것만을 말하며, 실제 수입물품에 부보한 경우에만 가산된다.

■ 发展至 人名 /

- 구매자는 판매자로부터 수입물품을 구입하면서 "물품에 손해(도난, 미도착, 파손 등)가 발생하여 대체품을 긴급히 항공편으로 수입할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일정한도까지 보상한다."는 특약보험에 부보하였다.
- → 특약보험은 '운송 및 운송과 관련되는 활동 중에 수입물품을 위해 발생된 보험료'가 아니라 '대체품의 수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담보한 보험료'이므로 가산되지 않는다.



- → 가산요소인 '보험료'란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 하는데 실제로 소요된 보험료를 말한다.
- →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 실제로 소요된 보험료는 AWB 보험 및 별도의 추가보험료의 합계액이므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는 이 2개의 보험료 합계액이 포함된다.